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3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년 2월 28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조례안의 시행일과 적용일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사용료 반납에 따른 행정 업무의 부담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바, 안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안 부칙 제2조(경과조치)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조(경과조치)를 삭제함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경과조치) [별표]의 사용료는 2016년 12월 29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	설	명	생활체육·평생교육	일반·행사	비 고		
일	반	교	10,000	20,000	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		
체	육	관	360㎡미만	15,000		40,000	
			360㎡이상 720㎡미만	20,000		50,000	
			720㎡이상	25,000		60,000	
운	일	반	단기사용	20,000	50,000	1시간	
			장기사용 (6개월 이상)	15,000			
	인	조	잔	단기사용	40,000		100,000
				장기사용 (6개월 이상)	30,000		
사	위	시	30,000		1개월		
창	고	(물 품 보 관)	30,000				

※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.

※ 특별교실, 시청각실, 컴퓨터실, 수영장, 농구장, 테니스장, 도서관 등 그 밖의 학교시설은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함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	
【별표】 학교시설 사용료(제4조 및 제8조 관련) 【단위: 원, 기준: 1시간】				【별표】 학교시설 사용료(제4조 및 제8조 관련) 【단위: 원, 기준: 1시간】					
시 설 명	생활체육 · 평생교육		일반 · 행사	비 고	시 설 명	생활체육 · 평생교육		일반 · 행사	비 고
일 반 교 실	10,000		20,000	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	일 반 교 실	10,000		20,000	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 육 관	360㎡미만	15,000	40,000		360㎡미만	15,000	40,000		
	360㎡이상 720㎡미만	20,000	50,000		360㎡이상 720㎡미만	20,000	50,000		
	720㎡이상	25,000	60,000		720㎡이상	25,000	60,000		
운 동 장	일 반	<u>20,000</u>		50,000	운 동 장	단기사용	<u>20,000</u>	50,000	1시간
	인 조 잔 디 (천연잔디포함)	<u>40,000</u>		100,000		장기사용 (6개월이상)	<u>15,000</u>		
사 위 시 설		30,000		1개월	단기사용	<u>40,000</u>	30,000		
창고(물품보관)	30,000		30,000		사 위 시 설	30,000		1개월	
그 밖 의 학 교 시 설 (특별교실, 시청각실, 컴퓨터실, 수영장, 농구장, 테니스장, 도서관 등)				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					
※ 체육관의 면적기준은 실제 사용면적을 의미함. <신설>				<삭제>					
부 칙				부 칙					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※ 특별교실, 시청각실, 컴퓨터실, 수영장, 농구장, 테니스장, 도서관 등 그 밖의 학교시설은 별표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의 시설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함.					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학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.			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				